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일본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경제산업성(METI)
3.	조항 Article 2.9.2 [X], 2.10.1 [], 5.6.2 [],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 정(井) 7304, 7305, 7306 · 펌핑 장비 8414.80 · 파이프라인 7304, 7305, 7306, 7307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CO2 저장 시설의 기술 표준 제공을 위한 장관령(2페이지, 영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JPN/25_05295_00_e.pdf 일본 질의처 국제무역부 경제부 외교부 팩스: (+81 3) 5501 8343 이메일: enquiry@mofa.go.jp
6.	내용: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법 조항 67(1)은 저장 사업자가 경제산업성 명령으로 정하는 기술 표준에 적합하도록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유지·관리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동법 조항 86(1)은 CO2 파이프라인 수송사업자가 기술 표준에 따라 CO2 파이프라인 수송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표준을 참고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법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정하는 장관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
8.	관련 문서: · 광산용 구조물 기술 표준 제공을 위한 장관령 (2004년 경제산업성 명령 제97호) (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M60000400097 • 가스시설 기술 표준 제공을 위한 장관령 (2000년 국제통상산업성 명령 제101호) (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2M50000400111 • 일반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규정 (1966년 국제통상산업성 명령 제53호) (일본어로만 제공)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1M50000400053 관련 통보: • G/TBT/N/JPN/824	9. 채택 예정일: 2025-11-21 시행 예정일: 2026-05-22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5-10-13 [X]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국제무역부 경제부 외교부 2-2-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9, Japan 전화: + (81) 3 5501 8344 팩스: + (81) 3 5501 8343 이메일: enquiry@mofa.go.jp	